

4 특수목적부 상품

(1) 주택청약종합저축

① 의의 :

- ㉠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저축으로서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기능을 묶어 놓은 저축이다.
- ㉡ 전체 업무취급 은행을 통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② 상품특징

구분	내용	
가입	주택소유·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청약자격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9세 미만인 경우는 세대주만 가능	
1순위자격	수도권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수도권외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
납입방식	㉠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다. ㉢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청약대상	국민주택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1세대당 1주택청약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을 기준으로 1인당 1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혜택	월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최대 연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표〉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

희망주택(전용면적 기준)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 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 ²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m ² 초과 135m 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 주식과 채권의 비교

(1)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의 구분

구분	주식	채권
발행자	주식회사	정부, 지자체, 특수법인, 주식회사
의사결정참여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 참여	참여권 없음
발행	자기자본의 증가	타인자본인 부채의 증가
자본조달 방법	자기자본	타인자본
증권소유자의 지위	주주	채권자
소유로부터의 권리	결산시 사업이익금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확정이자 수령 권리
증권 존속기간	발행회사와 존속을 같이하는 영구증권	기한부증권(영구채권 제외)
원금상환	없음	만기시 상환
가격변동위험	크다	작다
청산		주식에 우선하여 청산 받을 권리

(2) 최근에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이 혼합된 증권이 더욱 많이 발행되고 있다.

채권이 주식화된 경우	<p>투자자는 확정이자보다 주식으로의 전환을 통한 소득에 더 관심을 갖는다.</p> <p>예 전환·신주인수권부·교환사채 등 각종 주식관련 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가 있다.</p>
주식이 채권화된 경우	<p>투자자는 의결권보다 배당에 더 관심을 갖는다.</p> <p>예 우선주(이익참가부우선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모두 가진 증권인데, 투자자에게 매년 확정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만기가 무한한 채권과 유사하다. • 우선주의 시장가격의 증감은 발행주체의 수익성보다 시장이자율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우선주는 회사 경영과 관련된 의결권을 투자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채권과 유사하지만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파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주식의 특성을 갖는다. • 미지급 배당금이 있다면 기업은 보통주 배당금 지급전에 누적적 우선주 보유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 채권발행 주체의 이자비용은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우선주와 보통주의 배당금은 법인세를 차감한 순이익에서 지급되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법인세 감면효과가 없다. • 그러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의 30%를 익금불산입하기 때문에 우선주가 기관투자자에게는 어느 정도 매력적인 고정수익 투자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우선주와 채권의 비교

유사점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해진 현금흐름의 정기적 지급 (채권의 이자, 우선주의 배당금) • 회사경영에 대한 의결권 미부여 • 회사 순이익을 공유하지 않음 • 조기상환(채권) or 상환(우선주) 가능 • 감채기금 적립 가능 • 발행주체의 파산시 보통주보다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주 배당금 지급시 법인 비용처리 불가 • 우선주 배당금의 일부는 기관투자자에게 익금불산입 • 우선주 투자자에게 배당금 미지급시에도 발행주체는 파산하지 않음 • 회계처리가 다름 •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있음 • 우선주 배당금은 회계기간 종료 후 지급, 채권의 이자는 3개월마다 지급

③ 착오송금 시 법률관계

- ㉠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서, 착오송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기 때문에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금융회사	금융회사는 자금이동의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금융회사는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수취인	㉠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면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발생한다. ㉡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취인이 착오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
송금인	㉠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따라서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소송의 상대방은 송금요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이 된다(수취 금융회사는 자금중개 기능을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되지 않음).

- ㉢ '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신설되었다.

신청대상	· '21. 7. 6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 '23. 12. 31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 '25년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
대상조건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 (금융회사의 반환청구절차 결과 '반환거절' 또는 일부반환' 종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 가능
신청가능기간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
반환지원 신청절차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온라인 신청 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방문 신청

(4) 통장·증서의 교부

- ① 일반적으로 예금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입금받아 금액을 확인하고 입금기장을 마치면 금융회사는 거래처에게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를 기장하여 교부한다.
- ② 예금통장이나 예금증서는 단순한 증거증권이다. 따라서 예금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인이 금융회사에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다만 금융회사가 과실 없이 예금통장이나 증서 소지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되어 면책이 될 뿐이다.
- ④ 반면 예금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권리자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그러나 양도성예금증서나 표지어음 등은 그 성격이 유가증권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증서 소지자에게만 발행대전을 지급할 수 있다